2014년 인쇄회사가 꼭 알아야 하는 변경된 세법



지하식 세무사

학력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법학석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주요경력
-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 대표(2001-현재)
- 한국생산성본부 세무회계 강사(2006-현재)
- 서울상공회의소 세무상담역 및 세무회계강사(2002-현재)
-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 감사 (2012-현재)
- (사)서울기업경제인협회 감사(2013-현재)
- 서울인쇄조합 세무고문(2013-현재)

e. tax0246@naver.com
m. 010-3350-0246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갑오년은 우리 민족에게 애증의 역사를 주었습니다. 임진왜란의 기간이 있었고, 조선후기 전봉준의 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변혁의 시기를 훌륭히 넘길 수 있는 지혜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역사 속에 조선은 어떠했을까 하는 회한을 가져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그 시대를 둘러싼 국제와 국내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며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퇴보하기도 하고 진일보하기도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시 2014년 갑오년에 우리 인쇄업에 있어서의 환경은 어떠한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선 달라지는 세법이라는 환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밑에서 우리 회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없어지거나 바뀐 제도를 모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화살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맨몸으로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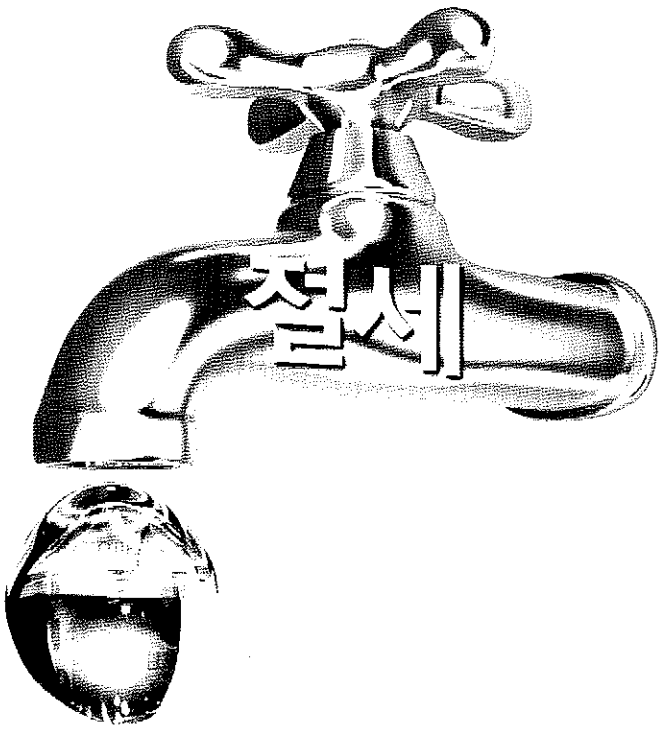
주식회사 청마인쇄의 김갑오 사장님이 알아가는 개정세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오 사장님 : 신년을 맞이하여 시무식을 갖으면서 이철저 과장으로부터 2014년 1월 1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세법 중에서 우리 회사가 알아야 할 내용을 간략히 브리핑하도록 합니다.

이철저 과장 : 우선 파주공장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공장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대출문제, 향후의 사업전망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5년째 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부지에 대하여 저희가 올해 팔게 되면 작년까지 일반 법인세에 더하여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30%가 붙었는데 올해 양도하게 되면 이 세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를 판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착공할 것인지 올해 안에 결정하여야 세금이 상당부분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용	근거조문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인하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년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법 제55조의2

둘째, 아드님이 만든 법인(중소기업)으로 저희의 매출이 절반 정도 발생하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소위 "세금폭탄"이라는 증여세가 나왔잖아요. 대기업이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이익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법을 만들었는데, 정작 중소기업이 대부분 대상이 되어서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 제도를 정비하여 올해부터는 우리 회사는 대상이 되지 않아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용	근거조문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들아주기에 대하여 증여세 제도를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한계보유비율 10%이상, 정상거래비율을 50%이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하여는 증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셋째, 사장님이 아드님께 작년 말에 증여하려던 것을 제가 올해 증여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개정되었습니다. 아드님께 증여하는 금액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3천만원이고요. 사장님이 작년 말에 제 말을 듣지 않았다면 1,800,000원 세금 내는 것인데, 저의 말씀을 믿어 주셔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용	근거조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넷째, 접대비에서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대비는 거래처에 주는 선물, 식사를 말하는데요. 이 접대비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접대비 중에서 도서나 문화공연 등으로 접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화 접대비라고 하고요. 일반접대비총액의 10% 이내에서 사용된 문화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저희업종에서는 박수를 칠 수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도 앞으로 술이나 음식보다는 이런 접대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법인세에서 도움이 됩니다.

내 용	근거조문
일반 접대비 지출금액의 1%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한정하여 추가로 손금을 인정하던 것을 일반접대비 총 지출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기업의 문화, 예술비 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김갑오 사장 : 다른 내용은 없는가?

이철저 과장 : 올해 7월1일부터는 10만원 넘어가는 인쇄를 맡긴 경우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60세 이상이나 만29세 이하 청년 또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50% 감면하고 3년간 적용합니다. 그 외에도 경리부서가 알아야 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그 쪽에 전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아셔야 할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김갑오 사장 : 우리 이철저 과장 때문에 회사가 이런 세금을 아낄 수 있었네. 인쇄물을 하나라도 더 수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이렇게 돈을 벌어 주는 것을 잊지 말게.

〈다음호에 계속〉